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이순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해와 보험의 명칭 등을 “풍수해·지진재해”로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舊풍수해보험법」 에서 “풍수해”의 정의는 ‘자연재해

- 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益)·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지진 및 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으나,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풍수해”를 ‘폭풍우와 홍수로 말미암은 피해’로 정의하고 있어 풍수해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사전적인 의미의 풍수해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이 보험 보장범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 및 정의 등에 지진재해를 명시하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상기 개정 배경 및 취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을 일괄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정비하고,
-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 인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법」 또한 개정된 제명인 「소상공인기본법」으로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 및 개정된 제명을 반영하여 조례 전반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국민이 해당 보험의 보장범위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7
------------	-----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이순우, 이규선, 최인순
정선회 의원 (4인)

1. 제안이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재해와 보험의 명칭 등을 “풍수해, 지진재해”로 변경함.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소상공인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풍수해보험 지원”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으로 한다.

제2조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료”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로, “수립·시행”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로,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을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상공인법」 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소상공인법」 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로 한다.

제6조 중 “풍수해보험에”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로,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으로 한다.

제7조 중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풍수해·지진재해보
험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촉진)”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홍보 및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풍수해로”를 “풍수해·지진재해로”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민에게 자연재해로 발생 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 한 <u>풍수해보험 지원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 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u>풍수해보험 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u>풍수해보험 료</u>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풍수해· <u>지진재해보험법</u>」----- ----- -----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u> ----- ----- ---. 제2조(정의) ----- ----- 「<u>풍수해·지진 재해보험법</u>」-----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 ----- ----- <u>풍수해·지진 재해보험료</u> ----- <u>매년</u>

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
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
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
함)으로 한다.

1. (생 략)

2.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
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험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험료
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2.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

제6조(보험료 지원) 구청장은 제5
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보
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
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

수립·시행-----.

제4조(보험목적물)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
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
이라 한다)--- 부수 또는 포함
되는 동산--.

1. (현행과 같음)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5조(지원대상) -----

-----.

1. (현행과 같음)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6조(보험료 지원) -----
----- 풍수해·지
진재해보험에 -----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u>풍수해보험 실무편람</u>에 따른다.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u>----- -----.
제7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은 「<u>풍수해보험법 시행령</u>」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u>」 제12조----- --.
제8조(<u>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촉진</u>)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u>풍수해보험</u>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u>풍수해로</u>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u>풍수해보험</u> 가입 촉진을 위하여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u>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촉진</u>) ① -----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u>풍수해·지진재해로</u> ----- -----. ② ----- <u>풍수해·지진재해보험</u> ----- ----- -----. ③ (현행과 같음)